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88
----------	-------

발의연월일 : 2025. 7. 4.

발 의 자 : 이성권 · 정성국 · 조정훈
우재준 · 정연욱 · 박정하
김용태 · 김재섭 · 김 건
신성범 · 조은희 · 박상웅
강명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회 또는 시위가 학교 주변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기준 이하의 소음으로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교육환경의 평온을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수업시간 등 일정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의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 중 “학습권”을 “학습권 및 교육환경의 평온”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나 제2항에 따른 확성기 사용금지 시간에 확성기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의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제4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 ④ (생 략)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u>학습권</u> 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 ----- ----- -- <u>학습권 및 교육환경의 평온</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생 략)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u>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u>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생략)	<u>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의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 ----- ----- ----- ----- ----- ----- ----- ----- ----- -----. 제24조(벌칙)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3항----- ----- ----- 5. (현행과 같음)
--	--